

의안번호	2205135
의 퇴 인	임광현 의원
회 답 일	2025. 3. 11.
추계번호	24A47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1조의20 (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등)	○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향후 세금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1조의20 (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향후 세금납부 등에 활용할 경우 국세 징수액의 감소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안 제81조의20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여한 세금포인트를 향후 세금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활용할 경우 국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단, 개정안 중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과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의 경우 현재 사업예산¹⁾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추가재정소요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함

1) 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300)” 사업 내에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25년 예산 70백만원) 및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25년 예산 425백만원) 예산이 기 편성됨(출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국세청)

- 현재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및 법인세(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자진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을 부여하며, 2024년 기준 미사용 포인트는 총 11,735백만점(개인 10,778백만점, 법인 957백만점)으로 집계됨
 - 세금포인트는 쇼핑몰 할인,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세법교실 수강,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이용 등([참고 1])에 사용되며, 개정안과 같이 납부세액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표 1] 최근 5년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현황

(단위: 백만점, %, 누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 부여포인트	7,289	8,125	9,540	10,771	11,823
- 개인	6,663	7,431	8,768	9,851	10,844
- 법인	626	694	772	920	979
2. 미사용포인트	7,240	8,069	9,474	10,694	11,735
- 개인	6,627	7,389	8,719	9,793	10,778
- 법인	613	680	755	901	957
3. 사용률	0.67	0.69	0.69	0.71	0.74
- 개인	0.54	0.57	0.55	0.59	0.61
- 법인	2.08	2.02	2.2	2.07	2.25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의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 납세의무자의 세금포인트(신규+미사용)와 향후 납부세액을 추계한 후 세금포인트 사용률(상계율)을 구하여 추계할 수 있음
 - 추가재정소요 = $\sum_{t=1}^5 (\text{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 \text{세금포인트(신규+미사용)}) \times \text{상계율}$
- 다만, 추계기간 동안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소득세·법인세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계하기 어렵고, 세금포인트를 납부세액에 반영하는 상계방식 등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부세액 충당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립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립	02-6788-4652	jitae@assembly.go.kr

[참고 1]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분	개인	법인
제도시행	'04. 4. 1.	'14. 3. 1.
대상자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여기준	자진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	
세금포인트 사용처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2.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	
	3. 쇼핑몰 할인(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행복한 백화점)	
	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5.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6.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이용	
	7. 문화·여가 혜택 ¹⁾ (CGV 관람료 및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주 1) 2024년 민간·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CGV영화관(193개), 국립자연휴양림(46개), 기타 관광지(19개), 전시관(4개), 숙박업체(2개)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함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